

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 선발 기준표

고려요소	판 단 기 준	가 중 치 (100)	비 고
재산상황 (건축물,주택,토지) 과세표준액 합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.5천만원 미만 : 10점 · 1.35억원 미만 : 5점 · 2억원 미만 : 0점 	10 (10, 5, 0)	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
가구소득	(지역, 직장보험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만원 미만 : 15점 · 3만원 미만 : 10점 · 5만원 미만 : 5점 · 5만원 이상 : 0점 	15 (15, 10, 5, 0)	건강보험료 조회결과
공공일자리 사업참여	당해 사업기간 포함 최근 2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: 20점 · 참여 5개월 이하 : 10점 · 참여 5개월 초과 : 0점 	20 (20, 10, 0)	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
세대주	세대주 여, 부	10(10, 0)	주민등록표 확인
부양가족수 (세대주·동거인제외)	3명이상, 2명, 1명, 없음	15 (15, 10, 5, 0)	주민등록표 확인
취업 취약 계층	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여성세대주	10(10, 0)	중복 가점 불가
	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·지 원 대상자	5(5, 0)	
	장애인 및 가족	5(5, 0)	
자격요건	당해분야 자격소지 여부	5(5, 0)	임상병리사 자격증,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
근로능력	만 65세 미만 : 5점 만 65세 이상 : 0점	5(5, 0)	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 준용 (근로능력자 : 18세 이상 65세 이하)

♣ 근로능력

- 고령자 참여 증가에 따라 연령에 따른 근로능력(업무효율성)을 감안하여 선발 필요 있음
- ※ 연령에 따른 근로능력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를 준용함.(근로능력자 : 18세 이상 65세 이하)
- 유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을 두고 있음.